

#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08. 10. 24.  
행정소방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10월 6일  
충청북도지사
2. 회 부 일 자 : 2008년 10월 8일
3. 상 정 및 의 결 일 자  
제27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소방위원회(2008.  
10. 22)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

##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곽임근)

### 1. 제안이유

- 가.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으로 인한 재산 감소를 방지하고  
집단화 등 도유지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토지 등을  
대체취득하며
- 나.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증가가 예상되는 소방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노후되고 협소한 제천소방서 화산  
119안전센터를 신축이전 하고자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재산의 취득 - 보존부적합 도유지 매각·대체취득

#### ○ 사업규모

구 분	위 치	매입면적(m <sup>2</sup> )	사업비(백만원)		비 고
			금액	재원	
대체취득	도내일원	50,000	2,100	도비	

○ 사업기간 : 2009. 1 ~ 2009. 12

○ 투자계획 : 2009년 - 2,100백만원

### 나. 재산의 취득 - 제천시방서 화산119안전센터 신축·이전

○ 위 치 : 제천시 명지동 국민임대주택단지

○ 교환시기 : 2008. 9 ~ 2009. 12

구 분	사업규모(m <sup>2</sup> )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부지	건물	계	국비	도비	
제천시방서 화산119안전 센터	2,774	826	1,920	-	1,920	지하 1층 지상 2층

○ 사업기간 : 2009. 1 ~ 2009. 12

○ 투자계획 : 2009년 - 1,920백만원

### Ⅲ. 검토보고 요지

(행정소방전문위원 운영창)

#### 1. 보존부적합 도유지 매각·대체취득

2009년도 보존부적합 도유지 매각·대체취득은 21억원 정도의 보존부적합 도유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에 상응하는 50,000㎡의 대체재산을 조성하되 매입대상 토지는 추후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보존부적합 도유지 매각·대체취득은 도유지 중 소규모 토지, 좁고 긴모양의 폐도·폐구거 등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를 이를 필요로 하는 민간에 매각함으로써 토지의 활용도를 제고함은 물론 도에서는 그 매각대금으로 도유재산의 집단화나 장래 행정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매입하여 비축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

그리고 보존부적합 도유지 매각대체취득에 대해 매입대상토지가 미확정된 상태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에 상응하는 대체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부족 등을 이유로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일반재원화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가 됨.

이와같이 본 계획안은 활용가치가 없는 공유재산을 이를 필요로 하는 민간에 매각하여 토지의 활용도를 제고함은 물론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조성을 원활히함으로써 공유재산 감소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견없음.

## 2. 제천시방서 화산119안전센터 이전·신축

본건은 제천종합운동장내에 위치하고 있는 현 제천시방서 화산119안전센터를 제천시 명지동 강저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이전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제천시방서 화산 119안전센터는 1985년도에 건축하여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대형소방차량 입고가 불가능하여 재건축이 필요하며

안전센터를 현위치에 재건축하지 아니하고 이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도시개발로 인하여 소방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제천 제2산업단지 와 강저 택지개발지구가 소재한 명지동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것임.

이와같이 본 계획안은 노후되고 협소한 119안전센터를 재건축하되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관할지역내의 변화된 소방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이전·신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 요지 : “생략”

VI. 심사 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281

제출연월일 : 2008년 10월 6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으로 인한 재산 감소를 방지하고 집단화 등 도유지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토지 등을 대체취득하며
-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증가가 예상되는 소방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노후되고 협소한 제천시방서 화산119안전센터를 신축이전 하고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 2. 주요내용

### □ 재산의 취득

#### 《보존부적합 도유지 매각 대체취득》

- 위 치 : 도내 일원
- 매입규모 : 50,000㎡
- 사업기간 : 2009. 1 ~ 2009. 12
- 사업비 : 2,100백만원
- 투자계획 : 2009년도 - 2,100백만원

#### 《제천시방서 화산119안전센터 신축이전》

- 위 치 : 제천시 명지동 강저지구국민임대주택단지 D-3블럭
- 사업규모
  - 부지매입 : 2,774㎡ 970백만원
  - 건물신축 : 지하1·지상2층 826㎡ 95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1 ~ 2009. 12
- 사업비 : 1,920백만원
- 투자계획 : 2009년도 - 1,920백만원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 200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7-2)

(단위 : m<sup>2</sup>)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천원)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계	토지	2 건	52,774.0	3,070,000				
	건물	1 건	826.0	950,000				
	기타							
1	토지	도내 지역 (세부내역 미정)	50,000.0	2,100,000	2009	재산 대체취득	미 정	
	건물							
	기타							
2	토지	제천 명지 강서지구 국민 임대주택 단지내 D-3블럭	2,774.0	970,000	2009	화산119전센터 신축이전	대한주택공사 (사유지)	
	건물	"	826.0	950,000	"	"	신 축	
	기타							
3	토지							
	건물							
	기타							
4	토지							
	건물							
	기타							
5	토지							
	건물							
	기타							
	토지							
	건물							
	기타							

# 관 계 법 령 발 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5조 제 6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p> <p>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p>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li> <li>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li> <li>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li> <li>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li> <li>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li> </ol>